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8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관련 지원 시책 마련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6. 19.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관련 지원 시책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 등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사전적·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방과 후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외에 아동·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뜻하며,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소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의 정책사업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방과 후 활동 관련 정책(예시)]

정책명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초등돌봄교실	온종일 돌봄체계	늘봄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소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성평등부
실시	1996~	시범 2004~	2017~	시범 2023, 전면 2024~	시범 2005 전면 2006~
주요 내용	방과후에 학교 교육 중심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에 학교 교육 중심 프로그램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돌봄 시간을 확대	학교 돌봄· 교육 프로그램 통합 및 중 요1·2 지원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 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의 체·정·심· 학습지원

※자료: 「2026년 운동네 초등돌봄·교육추진 방안」(교육부, 2026.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2.2%에 달하고, 전체 학생의 평균 참여율은 36.7%이며,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읍·면)은 도시 지역에 비해 방과 후 활동 참여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2025년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36.7	52.2	17.2	29.5	26.2

※자료: 「초중고사교육비조사」(국가데이터처 KOSIS)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참여시간(주당 평균)]

(단위: 시간)

구분	2025년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체	1.5	2.2	0.4	1.3	1.1
대도시	1.5	2.4	0.3	1.1	0.9
중소도시	1.3	2.1	0.3	1.2	1.0
읍면지역	1.9	2.4	0.8	2.0	1.7

※자료: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국가데이터처 KOSIS)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강사 등 인적 자원 수급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 후 활동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¹⁾,

이로 인한 학부모의 양육부담 가중은 청년층의 농어촌지역 이탈을 가속화함으로써, 학령인구 부족으로 인한 폐교 등으로 이어져 농어촌지역의 교육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촌지역 학생에게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양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 및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

1)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등

2)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

년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u>방과 후 활동</u> 의 지원) ①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u>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u>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u>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u>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u> (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u> 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u>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	
3. 방과 후 활동에 <u>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u>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1개 부처·청은 합동으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하면서, 방과 후 활동인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확산 지원, 강사 양성, 지역 기관 수요·공급 매칭 등 관련 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

가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

-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확산

* ('24.2학기) 전국 초등학교 도입(초1) → ('25) 초1~2 → ('26) 모든 학년 이용 지원

- (프로그램) 지역 인재 활용, 지역 문화·산업 연계 프로그램 보급*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늘봄과정 운영

* (부산) 자갈치수산시장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원) 지역산업(양양 서핑 산업 등)과 연계한 특화 늘봄 프로그램 운영
(전남) 지역사회 교육 기부(지역 프로축구팀,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를 통한 프로그램 발굴

- 치유, 숲 생태계, 정원, 동물 사랑,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맞춤형 농어업·농어촌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확산

- (인력)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기관
수요·공급 매칭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농어촌지역 강사 구인난 등 해소를 위해 대학·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

* 프로그램 공급기관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학교 매칭, 사용료까지 모두 지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육성된 인적자원, 치유농업사, 농촌
교육농장주, 산림교육전문가 등 활용, 늘봄학교 전문강사 양성

이를 감안하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관련 시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입법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특별히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시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입법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에 공감하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이미 방과 후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문 의 처
02)6788-5417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